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45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5. 3. 4.
3. 회부연월일: 2025. 3.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교육청은 규칙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적으로 하여도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에도 학교나 교육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를 심의하여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복직 등을 심사하게 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가. 학교의 장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을 업무에서 지체 없이 배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교원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복수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 등 소속으로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 등이 정신상의 장애 등과 관련한 휴직·복직·퇴직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의 규칙 등으로 규정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복직 등을 심의하게 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① (생략)	제44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을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서 지체 없이 배제하고, 학생에게서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원의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복수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45조의2(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따른 휴직·복직·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u>

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하려는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교원이 복직하려는 경우 휴직의 원인이 된 장애 또는 질환과 관련한 복수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 등에 대한 질병휴직 필요성, 휴직 종료 후 직무 감당 불능에 따른 직권 면직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교원 등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심의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각 교육청별 규칙에 근거)와 질병휴직위원회(「교육공무원법」 등에 근거)를 운영하고 있음.

[표 1]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병휴직위원회 현황

구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	질병휴직위원회(자문)
근거	· 각 교육청별 규칙	·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질병휴직)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교육부 예규)
운영	· 서울 등 14개 교육청 * 부산, 경기, 충북 교육청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음	· 전체 17개 교육청
대상	· 전체 교원 중 해당 교원	· 교육공무원 중 해당 교육공무원
심의 · 자문 사항	·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지속적인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아래 조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	·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아래 조항의 조치(휴직, 직권 면직) 필요성 · 아래 조항에 따라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 근무 가능 여부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58조제1항제1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7호의3(불임·난임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주: 1. 부산, 세종, 경기, 충북 교육청은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경북교육청은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로 운영
2. 서울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에 대한 것으로 규정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각 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1조 및 제2조,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1조 및 제2조 내용 정리

최근 4년간(2022~2025년) 기준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에서는 2022년 4건, 2023년 20건, 2024년 41건, 2025년 2월 기준 5건이 심의(자문 포함, 이하 동일)되었고,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교육청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 2]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병휴직위원회 심의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2.	합계
서울	-	2	5	-	7
부산	-	1	-	-	1
대구	-	-	-	-	0
인천	2	2	9	1	14
광주	-	-	-	-	0
대전	-	-	-	-	0
울산	-	1	2	-	3
세종	-	-	-	-	0
경기	-	2	3	-	5
강원	-	-	-	-	0
충북	-	1	6	2	9
충남	-	3	3	-	6
전북	2	3	3	1	9
전남	-	-	1	-	1
경북	-	2	8	-	10
경남	-	-	1	1	2
제주	-	3	-	-	3
합계	4	20	41	5	70

자료: 교육부

위원회 심의건수가 적은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사유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 휴직을 명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거나, 휴직 기간 종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하여 면직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등이 해당 사안의 심의나 의견청취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교원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교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복직 등을 심의하게 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① 위원회 설치 근거, ② 심의사항, ③ 복직 관련 서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먼저, 개정안 제45조의2제1항은,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따른 휴직·복직·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해당 내용은 현행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과 유사하나, 위원회를 교육감 외에 교육부장관 소속으로도 두는 차이가 있음.

이는 현행법상 학교급별 지도·감독권자가 유·초·중등학교의 경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으로 이원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표 3] 학교급별 지도·감독권자

구분		지도·감독
유·초·중등	국립	교육부장관
	공·사립	교육감
대학	국·공·사립	교육부장관

자료: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내용 정리

다만, 위원회의 개별적 설치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각 시·도교육청별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현행체계에 준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의 안전,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소속 위원회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국·공·사립을 모두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시·도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인사교류에 대한 요청을 국·공립학교 모두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²⁾

② 다음으로, 개정안 제45조의2제2항은 질병휴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

이 중,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하려는 경우(제2호)는 현행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또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유사함.

한편, 제4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을 요청한 경우(제3호)는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를 신설된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인사교류)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해당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하거나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부설학교의 경우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는 임용권자 또는 교육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의 시행에 필요한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각각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44조제2항 본문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을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서 지체 없이 배제하고, 학생에게서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원의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정안에서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휴직을 요청한 경우 이를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장의 판단 이후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교원의 휴직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휴직 보다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업무배제와 분리조치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결정되는데, 해당 조치는 기간과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휴직과 유사하게 교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이므로,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에서 분리조치 사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따라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경우,³⁾ 「학교폭력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경우⁴⁾ 등이 있으며,

학교의 장 등이 교원 등을 분리조치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표 4] 분리조치, 업무배제가 포함된 개정안 현황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2208225호)	조정훈 의원	2025.2.17./ 2025.2.18.	• 학교의 장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되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직무배제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 가능(안 제44조의2)
2	교육공무원법 (제2208390호)	김문수 의원	2025.2.24./ 2025.2.25.	•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임용권자 보고 (안 제44조의 신설)
3	교육공무원법 (제2208393호)	안상훈 의원	2025.2.24./ 2025.2.25.	•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에 대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되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직무배제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 가능(안 제44조의2)
4	대안교육기관법 (제2208531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17조의2)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 할 것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ㄸ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5	사립학교법 (제2208533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53조의6)
6	사립학교법 (제2208807호)	김문수 의원	2025.3.11./ 2025.3.12.	• 학교의 장은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피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분리조치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안 제58조의3 신설)
7	초·중등교육법 (제2208524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20조의4)
8	초·중등교육법 (제2209769호)	김대식 의원	2025.4.11./ 2025.4.14.	• 학교의 장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교내분쟁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 분리 등 적절한 조치 가능(안 제20조의2 등)
9	학교폭력예방법 (제2208139호)	강경숙 의원	2025.2.13./ 2025.2.14.	• 학교전담경찰관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하고 긴급 분리 조치 가능(안 제20조의6)

주: 개정법률안명 - 의안번호 순으로 정렬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개정안 제44조제2항 단서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복수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

전문의를 해당 교원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의학적 관점에서 진단을 내리는 전문가이기에는 하나, 교원의 특성과 근무환경 등을 숙지하여 교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자료를 조치 예외 사유로 적용하기보다,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 제44조제2항은 업무배제, 분리조치, 휴직 요청 등에 대한 내용을 현행법 제44조(휴직)에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44조(휴직)는 휴직의 사유 및 이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직 외에 업무배제, 분리조치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③ 또한, 개정안 제45조의2제3항은 질병휴직 후 교원이 복직하려는 경우, 휴직의 원인이 된 장애 또는 질환과 관련한 복수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휴직의 원인이 된 장애 또는 질환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공무원 임용규칙」에서도 질병휴직자의 복직 후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5)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직자를 복직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57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임용령 제57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질병휴직)제1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한편,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 근거, 심의사항, 복직 관련 서류 제출 외에 위원회 구성·운영,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직무수행 적합성 관련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각 개정안은 위원회 관련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표 5] 심의위원회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현황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2208091호)	고동진 의원	2025.2.12./ 2025.2.13.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3 신설)
2	교육공무원법 (제2208113호)	박덕흠 의원	2025.2.12./ 2025.2.13.	·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정사유에 포함 (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3조의3 신설)
3	교육공무원법 (제2208138호)	강경숙 의원	2025.2.13./ 2025.2.14.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3 신설)
4	교육공무원법 (제2208153호)	김기현 의원	2025.2.14./ 2025.2.17.	·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휴직한 교원의 복직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45조의2 신설)
5	교육공무원법 (제2208160호)	고민정 의원	2025.2.14./ 2025.2.17.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휴직교원 복직시 심의 의무화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6	교육공무원법 (제2208225호)	조정훈 의원	2025.2.17./ 2025.2.18.	·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직무 배제 절차 신설 (안 제44조의2)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4조의3)
7	교육공무원법 (제2208232호)	윤준병 의원	2025.2.18./ 2025.2.19.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 (안 제44조의3 신설 등)
8	교육공무원법 (제2208390호)	김문수 의원	2025.2.24./ 2025.2.25.	·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 고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4조의4 신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수 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들과 병합하여 심사한 뒤 종합적인 법률개정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질환교원’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 명칭으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제안함.
○ 대전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복수의 전문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하나의 질병으로 두 곳 이상의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자유에 위배됨.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다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충청북도교육청: 신중검토 - 정신질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현대인은 누구나 약간의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동 법안은 다양한 경우에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경상북도교육청: 일부수정 -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학교의 모든 종사자로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일부수정 - 개정안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교원의 휴직·복직·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임.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연계·통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함. - 개정안 제45조의2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동일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가 중복 설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중 한 곳으로 소속을 일원화하여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 설치 시 존속기한(최대 5년)을 명시하여야 함

문 의 처

02)6788-5189